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산 업 집 적 활 성 화 및 공 장 설 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 등 사업재편 활성화 및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안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가능 시설을 일부 금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입주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6항제12호나목 신설)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

용하는 기업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함.
(안 제26조제8호)

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지원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허용 대상을 변경함. (안 제36조의4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중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나.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아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

제26조제8호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및 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

제34조제1호다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공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제3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설로”를 “시설 외 모든 시설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에 따른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시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

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은 동일한 업종의 총 시설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법 제28조의5에 따른 시설이 입주하는 경우

별표 3 제3호나목 중 “1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 ④ (생 략)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1. ~ 11의2. (생 략)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1. ~ 11의2. (현행과 같음)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나.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아 산업용지

	<u>또는 공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u>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 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과 같다.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완화)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u>외국인투자기업</u>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 ----- ----- ----- -- <u>외국인투자기업 및 제6호</u> <u>에 따른 국내복귀기업</u> ----- -----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 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 위)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나. (생략)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	1.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
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
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
행령」 제33조제2호에 따
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생략)

2. (생략)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
주) ① (생략)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
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
다.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
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
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
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

-----.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공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
주)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설 외 모든 시설로 ----.
<단서 삭제>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
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나. 광업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에 따른 격리병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시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삭 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

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
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
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
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
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
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
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
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

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
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
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삭 제>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하
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22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지정되
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경
우에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
9조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허용면적을 확대하
거나 지원시설을 추가할 수 있
다. 다만, 같은 업종의 시설 총
면적은 지원시설 총면적의 100
분의 50(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상점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100
분의 50에 해당 상점의 건축연
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
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
는 시설의 총 면적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은 동
일한 업종의 총 시설 건축연면
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
설의 총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 <단서
삭제>

<u>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u> 1. · 2. (생 략) ⑤ · ⑥ (생 략)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① ~ ④ (생 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 ~ 6. (생 략) <u><신 설></u> ⑥ · ⑦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 6. (현행과 같음) <u>7.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법 제28조의5에 따른 시설이 입주하는 경우</u> ⑥ ·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연 락 처	(044) 203 - 4409